

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 승인신청(신고)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일	처리기간	유의사항 참조
신청인 (신고인)	성명	생년월일(성별)		
	전화번호			
	주소			
대리인	성명	전화번호		
점용·사용 허가 (협의·승인)	연월일	허가번호		
	장소	면적(또는 채취량·투기량) ㎡(㎡)		
실시계획 승인(신고)	공사 내용			
	공사기간	~	총공사비	

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전단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신청(신고)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신고인)

(서명 또는 인)

(공유수면관리청) 귀하

첨부서류	- 사업계획서(점용·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- 점용·사용허가 구역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 또는 연안정보도(배타적 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, 점용·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시 제출한 서류와 달라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- 공사설명서(공사시방서, 공사명세서, 공사비산출근거, 수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합니다) - 건설사업관리계약서(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공사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- 실시설계도서. 다만, 건축물의 신축·개축 또는 증축에 관한 실시설계도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. 가. 공유수면에 정착하는 건축물: 「건축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가 작성한 것 나.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: 「기술사법」 제6조에 따른 건축 관련 분야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에 따라 선박 부문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건축사의 참여하에 작성한 것 - 예정 공정표 - 점용·사용 허가조건에 따른 조치사항 및 조치계획을 적은 서류 ※ 이 별지에서 "공유수면관리청"이란 해양수산부장관, 시·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합니다.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유의사항

- 처리기간 : 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 실시계획의 승인: 20일
-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·사용실시계획의 신고 수리: 10일
- 검토 시 허가조건에의 조치사항, 설계도서의 타당성, 시설물의 안전성,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 기술적 사항을 고려합니다.

처리절차

